

부산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338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3. 7.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5. 18. 접수 제53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채권자로서, 이 법원 2016차전1965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1,999,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9.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21. 3. 7.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E, F, G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2) 피고와 C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은 2021. 3. 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1.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계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H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그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하였던 것이므로, 망인 사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04.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C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와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성

별지